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라이프자산운용(주) (이하“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공개합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40조3항 4항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 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①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② 5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교류차단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정보. 단, 제45조에 따른 부문별 책임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
- ③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의 정보
- ④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운용점검 및 상품설명서 검증을 위해 신탁업자·판매회사 등에 제공하는 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41조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업무를 포함, 이하 같음)

2.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40조 §44조 §48조

- ①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 :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 집합투자재산(일반·기관전용사모펀드를 포함)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문업무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 ③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상기 정보교류차단 부문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및 선행매매 금지 의무 준수를 전제로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보교류를 상시 허용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9조

1.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회사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한다

- ①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 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거래주의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①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② 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③ 상기 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④ 회사가 상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⑤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0조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다만, 아래 사항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알려진 이해상충의 유형의 예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그 외에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해상충 유형	업무프로세스	이해상충 방지수단
개인투자행위	임직원의 사적투자행위 (국내상장주식)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및 사후신고절차
재산상 편익	업무와 관련하여 선물 및 향응을 수령하는 행위	준법감시인에 보고
의결권의 행사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대외활동	회사업무 이외의 사적활동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중개회사의 선정	집합투자재산 매매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	중개회사 선정기준 준수점검
운용지시 (사전자산배분)	여러 집합투자기구(계좌)를 위한 주문	운용역과 트레이더 분리, 사전자산배분 확인
오류수정	기준가격 산정 및 매매 등의 업무관련 오류의 수정	보고 및 수정방법 승인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일정기간이 경과한 정보의 제공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 이해상충의 관리

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어 업무를 처리하며, 회사의 이해상충 유형과 이해상충 유형의 문제의 해결 원칙은 다음과 같다.

2. 이해상충의 유형

- ① 회사와 임직원의 관계
- ②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 ③ 관계회사 등과 고객과의 관계
- ④ 임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 ⑤ 특정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관계

3. 이해상충유형의 문제해결 원칙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

4.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리스크관리본부로 하고,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또는 부서의 장을 정보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로 한다.

5. 시행일: 2021.5.20 (개정 2024.04.15)